2024년「제24회 화물자동차운전자의 날」정부포상

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화물운송사업 발전과 교통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및 공로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하오니 우리조합 홈페이지(www.truck.or.kr)를 참고하여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정부포상 및 표창

가. 대상

-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
- 화물운송사업자
- 화물연합회(일반,개인소형,개인중대형) 및 시·도협회(운수회사), 유관기관의 공로직원
- 화물공제조합 공로직원
- 화물운송 및 교통관련업무 지자체 공무원

나, 포상인원(예정)

훈 격	인 원(명)	
정 부 포 상 (대통령, 국무총리, 국토교통부장관 표창)	00 명	
화물연합회장표창	00 명	
합계	00 명	

※ 대통령, 국무총리 표창은 화물자동차운전자에 한함

2. 교통안전 문예작품 공모 포상

가. 모집부문

- 화물운전자·가족 생활수기
- 교통사고예방 아이디어(화물차 관련)
- 교통안전 표어

나. 당선작

훈 격	수기·사례	안전표어	아이디어	합계
국토교통부장관(상)	0 명	0 명	0 명	0 명
화물연합회장(상)	0 명	0 명	0 명	0 명
이사장(상)	0 명	0 명	0 명	00 명
합 계	0 명	00 명	0 명	00 명

※ 교통안전표어, 교통사고예방 아이디어 일반인 응모 가능

3. 부문별 응모자격

가. 포상

구 분	기 준
화물자동차 운전자	- 사업용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각 5년 이상인 자 - 10년, 20년, 30년 이상 장기 무사고운전자 우대 - 최근 10년 내 중대 교통위반자(음주운전, 사망사고, 교통위반 다수건 등) 응모 지양(심사 제외 사항) - 교통안전 및 사회봉사활동경력 우대
화물운송사업자	- 화물운송업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화물운송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 적 또는 국가 물류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업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화물운송사업자 대표이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-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및 업계발전을 위해 제안, 건의, 추진, 시행 등 적 극적으로 참여한 특별한 업적이 있는 자 우대 - 교통안전 및 사회봉사활동경력 우대
화물연합회, 협회, 공제조합, 운송회사, 유관기관의 공로직원	- 연합회, 협회, 운송회사, 교통관련 단체에 근무증인 자로 근속기간이 5년 이상, 각 교통안전 관련업무 및 협회업무를 통해 업계발전과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한 업적으로 화물운송업 발전에 기여한자 - 화물운전자 복지향상, 업계 발전을 위한 건의, 제안, 추진 시행 등 특별한 업적이 있는 자 - 교통안전 및 사회봉사활동경력 우대
공무원	- 정부의 선발 기준에 의거 추진

나. 교통안전 문예작품

구 분	기 준	작 품 형 식
생활수기, 무사고사례	사업용 화물운전자/가족	- 화물자동차 운전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과 회.노.애.락을 적절하게 표현한 경수필 형식 -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필 요성, 마음가짐, 실행사실 등을 표현 - 사고경험자라 하더라도 사고 후의 마음가짐 또는 다짐 등 느낀 점을 글로 표현 -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, 홍보시행 등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케 한 사실 등을 글로 표현한 경수필 ※ 작품매수 A4용지 3매 이상 작성
교통안전표어	사업용 화물운전자/가족, 일반인	-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쉽게 이해되고 오 래 기억에 남는 4언 절구의 글 ※ 개인 당 5작품 이내 제한
교통사고예방 아이디어	사업용 화물운전자/가족, 일반인	-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독창적이고 실현가능하며, 기대효과가 큰 아이디어를 내용으로 하는 무형식의 글 ※ 작품매수 A4용지 3매 이내로 제한

4. 구비서류(서식)

 전국화물공제조합 각 시·도 지부, 개인소형화물연합회·개인중대형 화물연합회 문의 및 전국화물공제조합 홈페이지(www.truck.or.kr)
에서 다유로드

5. 응모방법

○ 포상 및 문예작품을 추천기관 통해 응모

6. 접수기간 및 접수처

- 2024. 4. 15 ~ 5. 13, 17:00까지(도착限)
- 전국화물공제조합 각 시·도지부
- 개인소형화물연합회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및 각 시·도협회

7. 수상자 발표(포상일시)

- 심사 및 수상자 확정 후 각 단체를 통해 개별 통지
- 포상일 : 2024년 제24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(9월 중)

8. 유의사항

- 정부포상업무 지침 '정부포상 벌칙 규정' 내용(지침 p.12)
- 상훈법 제38조 제2항(벌칙)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·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·제출 또는 기재·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
- 접수된 서류(자료)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된 문예작품의 제작, 배포, 출판에 대한 권리는 전국화물공제조합에 있습니다.

9. 문의사항

- 전국화물공제조합 홈페이지(www.truck.or.kr)
- 전국화물공제조합 각 시·도 지부 및 본부기획부(02-3483-3730)
-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(02-572-0808) 및 시·도 협회 (홈페이지 http://www.yongdal.or.kr/2015/)
-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(02-587-0214) 및 시·도 협회 (홈페이지 http://www.pta.or.kr/bbs2/index.php)



